

제21대 대한요트협회장 선거 선거운동 및 금지행위 등에 관한 안내

가. 선거운동

제16조(선거운동의 정의), 제17조(선거운동 기간)

○ 선거운동

-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, 되게 하거나,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-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
 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·의사의 표시
 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(선거사무원등 선임을 위한 교섭 행위, 선거공보 제작행위,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행위 등)
 - 통상적인 업무행위

■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

- ▶ (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판결)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,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.

○ 선거운동 기간: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

-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

나. 선거운동 방법

제18조(선거운동의 주체, 방법 및 제한)

○ 선거사무소 설치(1개) 및 사무원(사무장 포함 3명)

○ 선거운동 방법

< 선거운동 방법 및 가능대상 >

연번	선거운동	가능대상
1	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	후보자
2	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	후보자
3	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·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· 문자메시지(그림말·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포함) 전송하는 방법	후보자, 선거사무원등

4	<p>정보통신망(SNS 포함)을 이용한 선거운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협회(연맹, 회)가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하는 방법 ▸ 전자우편(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·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, SNS를 포함)를 전송하는 방법 <p>*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홈페이지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요청</p>	후보자, 선거사무원등
5	<p>윗옷(上衣) 및 어깨띠,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 ▸ 체육시설(경기 및 훈련 시간 제외)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 <p>* 제한장소: 병원·종교시설·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</p>	후보자, 선거사무원등
6	<p>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▸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<p>* 후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토론회 운영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함. *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음.</p>	후보자
7	<p>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선거일 투표 개시 전에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 소개 및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발표(10분 이내) 	후보자

■ 협회(연맹, 회) 임직원 또는 선거인이 SNS상 재공유(리트윗 등)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문제가 있나요?

- ▶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■ 시도회원단체 임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선언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?

- ▶ 할 수 없습니다.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(선거의 중립성)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안됩니다.

■ 시도회원단체 임원들이 토론회를 요구할 때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나요?

- ▶ 시도회원단체 임원 등이 토론회를 요구한 경우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한 경우에 개최가 가능합니다.

■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를 꼭 해야 하나요?

- ▶ 후보자 소견발표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나, 후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▶ 아울러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은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< 기간별 제한·금지사항 >

기간	제한·금지사항
언제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임·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(법 §31) ▸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(법 §58) ▸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(법 §61, §62) ▸ 사위등재 및 사위투표 금지(법 §63, §64) ▸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금지(법 §65)
임기만료일 1년 전 ~ 선거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기부행위 제한·금지(법 §32 ~ §35)
선거일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선거일 후 답례금지(법 §37)

위탁선거법의 처벌 대상 조항

① 제31조(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)	⑥ 제61조(허위사실 공표죄)
② 제35조(기부행위제한)	⑦ 제62조(후보자 등 비방죄)
③ 제37조(선거일 후 답례금지)	⑧ 제63조(사위등재죄)
④ 제58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	⑨ 제64조(사위투표죄)
⑤ 제59조(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)	⑩ 제65조(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·교란죄)

※ 상기 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임직원은 각별한 유의가 요망함.

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31~37조 준용

구분	주요내용
금지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함. - 금전, 물품, 직책 등을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-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- 금품 제공을 승낙하는 행위 - 금지된 행위를 지시, 권유, 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- 선거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나누어 운반하는 행위 ○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금지 ○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인을 개별적 방문 금지
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금지. ○ 후보자나 그 가족을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금지 - 단,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은 예외



구분	조치내용
위반행위에 대한 조치	○ 위탁선거법에 따라 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, 경고, 시정 명령,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.
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	○ 위반행위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: 관련 사실을 먼저 전화로 알리고, 서면으로 중지, 경고 또는 시정명령 통지 ○ 선거인에게 통지: 위반사실과 제재내용을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통지 ○ 투표소 게시: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투표소 출입구와 내부에 게시

☞ 별지 제12호 서식 「(중지)·(경고)·(시정명령) 통지서」

☞ 별지 제13호 서식 「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통보서」

☞ 별지 제14호 서식 「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문」

라. 기부행위

위탁선거법 제32조, 제34조, 35조 등

○ 기부행위의 정의 (법 제32조)

- 선거인¹⁾이나 그 가족²⁾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³⁾에 대하여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,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1) 선거인

-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서,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*를 포함

*해당 단체에 가입되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

2) 선거인의 가족

- 상기 1)항의 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손자, 외손자 등)과 형제자매,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

3) 상기 1)항 및 2)항의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

- 기부행위란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, 유상이라 할지라도 그 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.
- 또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약속만으로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됨.

○ 기부행위 제한기간 (법 제34조)

-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

- (당초 / 2024.7.30.까지 적용)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
- (개정 / 2024.7.31.부터 적용)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

※단,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, 2024.7.30.까지의 임기만료일 1년 이내 기부행위는 법령상 저촉되지 않음.

- 정관 등에 따른 보궐선거: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

○ 주체별 제한내용 (법 제35조) ※ 아래 '후보자'는 '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'를 포함

분류	제한주체	제한내용
직/간접 기부행위	후보자 및 그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	·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<u>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.</u>
대리 기부행위	누구든지	·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<u>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, 하게 할 수 없음.</u> ※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,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.
기부행위 수락	누구든지	·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<u>선거에 관하여 상기 조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,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.</u>
기부행위 유도	누구든지	· 누구든지 <u>상기 행위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 할 수 없음.</u>

○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
구분	허용내용
1. 직무상의 행위	가. <u>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·물품을 그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</u> 하는 행위(포상 포함) 나. 위탁단체가 <u>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·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</u> 하는 행위(포상 포함) 다. <u>물품구매·공사·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</u> 하는 행위 라. <u>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·출연 또는 제공</u> 하는 행위

구분	허용내용
<p>2. 의례적인 행위</p>	<p>가. 「민법」 제777조(친족의 범위)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↳ 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</p> <p>나.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(5만원 이내)에서 축의·부의금품(화환·화분을 제외함)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↳ 화환·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</p> <p>다.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(3만원 이내) 또는 답례품(1만원 이내)을 제공하는 행위</p> <p>라. 소속 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(3만원 이내)을 제공하는 행위 ↳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.</p> <p>마.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 등 각종 사교·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</p> <p>바.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·성당·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(물품 제공 포함)하는 행위</p>
<p>3. 구호적·자선적 행위</p>	<p>○ 공직선거법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- 「재해구호법」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(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) 및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)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·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- 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언론기관·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↳ 다만,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- 자선·구호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·법인을 통하여 소년·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-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·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·소녀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무의탁노인, 결식자, 이재민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구분	허용내용
	<p>☞ 다만,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</p> <p>-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(야학을 포함한다)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</p>
4. 그 외	<p>○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</p>

■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업무상 화환·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? (대회, 직원 경조사 화환 등)

- ▶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화환, 화분의 제공은 가능합니다.
- ▶ 단, 단체장 명의의 제공은 불가합니다.

■ 각종 대회(도민체전, 도지사기, 동호인대회 등)에서 통상적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제공이 가능한지?

- ▶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.
- ▶ 따라서, 위 경우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한다면 위탁선거법 제33조 제2항의 의례적인 행위에서 제한하는 금액(3만원 이내)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.
- ▶ 다만, 간담회 등 식사를 대접하면서 '선거 출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'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 위반 및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간담회 개최 명의로 단체명의 개최가 아닌 단체장 명의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.